

# 골판紙包裝 · 物流産業政策

## Corrugated Packaging & Logistics Industry Policy

이 난은 골판지포장 산업과 물류 산업 관련 정부 정책 및 산업계 정책 건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포장화 정책의 추진방향과 개선과제

자료 : 농림부 유통정책과 제공

#### 1. 농산물 유통정책(포장화)의 이해

##### 1. 농산물 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상품유통은 출하 중계 소비의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출하에서 소비 단계까지 이르는 물류흐름의 낙후성, 중계 Mechanism의 비효율성, 생산 출하단계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유통과정에 많은 부작용 <유통 비효율성 실태>

과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와 같은 농산물 유통체계는 정부투자자와 법적 제도의 미비점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으나 그동안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에서 대외적 여건변화나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예상치 못하고 보호와 규제, 폐쇄된 시장질서속에 안주해온 유통종사자의 인식부족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 인	문 제 점
▲농산물 특성 생산물적 특성상 취급 곤란성	상하차, 수송과정에서 인건비 수송비 과다 소모 유통과정상 부패 감모등 상품성 저하 부피가 커서 넓은 매장 차지 생산자 소비자가 다수여서 분산과정이 복잡
▲생산·출하의 영세성	생산 출하 규모가 영세하여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유통비용 증가 생산자 교섭력 저하
▲중계기구의 비효율성 유통과정상 도매 시장의 지배력이 큼	일부 중매인의 경매시 불공정거래행위 상존 중도매인의 거래 비노출로 불명확한 마진 부가
▲소매규모 영세성	소매단계 소비규모의 영세성으로 다수의 중간상이 관여하여 유통단계복잡 및 유통비용 증가 도매상 견제 기능 미흡

## 2. 농산물 유통여건의 변화 및 전망

가) 농산물 유통환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산물 수입 개방이라 할 수 있다. 지난 95. 1부터 시작된 WTO 체제의 출범으로 농산물도 대부분 개방화되어 있는데 '97년에는 이미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전품목이 개방되어 있는 형편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수입된 농산물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국산농산물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생산기술 발달 및 자원의 풍족으로 생산비가 절감되고 물류기계화 등 선진유통기법은 가격 면에서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등급화된 상품의 유통으로 품질 면에서도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나) 또한 국내 농산물 유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유통시장 지배력 변동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이 유통경로상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97년 현재 외국인에 대한 국내 유통시장 참여제한(점포수 및 매장면적 규제)철폐되자 선진유통기법을 가진 외국유통업체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국내의 대기업이 유통업에 진출하면서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유통주체간의 시장지배력과 경쟁력확보가 큰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형의 유통업체의 진출로 표준 규격화된 대량의

농산물의 수요가 증대되게 될 것이며 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해 직거래를 증가시키고 선진화된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상품정보의 표준화도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등 물류표준화에 부합하는 상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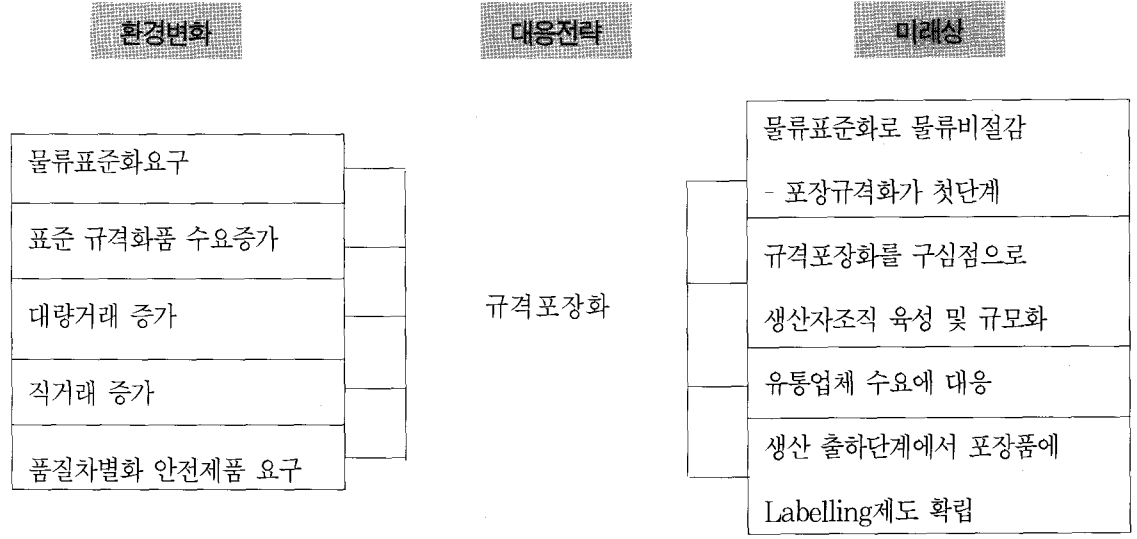
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국민소득의 증가는 농산물 소비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즉,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상품등급에 따라 수요가 차별화 될 것이다.

## 3. 대응 전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여러가지 면에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산물 자체 특성에 따른 품질관리의 어려움, 생산 소비의 영세성으로 인한 유통경로 및 유통비용의 증가, 물류흐름의 비효율성, 중계기구의 비효율성은 농산물 수입, 유통시장 개방 및 유통경로 다원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격포장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규격포장화를 구심점으로 생산재조직의 육성 및 규격포장품의 대량출하 체제 구축, 다변화된 유통업체의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물류표준화와 생산단계부터 포장 농산물에 대한 Labeling 제도 확립 및 품질보증제 확립등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규격포장화가 그 핵심적 과제이다.



## II. 포장화 추진 현황

### 1. 포장화 필요성

#### 가) 농산물(포장) 출하현황

농산물 포장화정책은 표준규격이 제정되기 시작한 '84년 이후 규격출하 촉진자금을 지원하여 포장출하를 유도해오고 있으나, 엽근채류는 상관행, 선별 포장 어려움등으로 포장화가 미흡한데,

'96년말 현재 참외 98.8%, 감자 98.4%, 토마토 98.3%로 과채류를 비롯한 과실류등은 포장화가 정착단계에 서 있으나 엽근채류의 포장화율은 배추16.2%, 파0.0%, 수박 4.4%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140여개 품목중 배추(점유율 -16.2% 무(10.3%) 수박(4.5%) 파 (3.5%) 등 포장화가 부진한 엽근채류가 높은 거래 비중을 차지하는데 심각성이 있다.

#### 나) 포장출하 동향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 실시로 초기에는('97.1-4.30) 배추의 경우 포장화율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일부 유통인의 포장화 인식결여 및 비협조로 포장출하는 답보 상태에 있다.

#### 다) 산물출하의 문제점

◎ 운송 하역단계에서 수작업 의존으로 물류비증가의 원인  
그 내용을 살펴보면 97년 국가 전체 물류비가 GDP대비 16% 수준이나 농산물 물류비는 2.7%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출하→하역단계에서 기계화 불능으로 인한 하역인력 과다에 의한 인건비증가 및 도매시장내 다듬기에 의한 불명확한 마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 산물출하는 도매시장내 불공정거래 요인이 됨.

출하주로부터 시장에 반입된 산물품은 정확한 수량도 모르는채 거래되어 출하품의 단위당 정확한 가격이 알려지지 않아, 이는 도소매 단계에서 불명확한 마진이 부가되는 원인이 되고, 또한 소비자 가격의 적정성 및 경매가의 적정성도 평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 소비자 쓰레기발생 원인

도매시장내 반입된 물품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다듬기

등 개선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다한 쓰레기, 악취 및 먼지등이 발생하여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며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가락시장은 지난 한해동안 쓰레기가 15만 톤이 발생하였고 처리비는 57억에 달하였다.

◎ 운송중 감모 및 상품성 저하

농산물은 생물적 특성으로 인하여 취급이 어려운 바, 특히 엽근채류는 부패하기가 쉬워 여름철 운송되는 배추의 경우 감모율이 최대 30% 까지 발생하여 상품성 저하 및 쓰레기 발생 등의 원인이 된다.

◎ 수요변화에 대한 대처 불가능

향후 농산물 거래에 있어서는 유통업체마다 신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선별규격화품에 대한 수요증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의 농산물 유통체계로서는 대체하기가 어렵다.

#### 라) 포장화 기대 효과

◎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농산물 포장화사업의 정착시 획기적인 물류체계 개선이 기대되는 바, 이미 당부는 포장 및 하역기계화를 통하여 현재 물류비의 40% 수준을 절감하려는 목표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내 하역시간 단축, 차량대기시간 단축, 교통체증완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 공정거래 실현

출하단계부터 포장출하를 하는 경우 도매시장내 경매단계에서는 경매가 및 차당수량이 정확히 파악되고 개당 경락가가 고시되어 도소매단계에서 적정마진만 부가하게 되며 소비자 가격의 적정화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쓰레기발생 근원적 차단

근래에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쓰레기줄이기 범국민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농산물(음식물)쓰레기는 수분 함량이 많고, 악취, 폐수 등의 발생등으로 처리가 어려워 쓰레기 감소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포장출하는 그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지에서 선별하여 도매시장에 반입하면 쓰레기발생원천이 근원적으로 제거되므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상품성 제고

산물품은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운송 하역 단계에서 상품성 훼손이 심하나 포장품은 운송중 감모가 방

지되고 Cold Chanin System 구축시 선도 유지 및 품질향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포장재에 Labeling 제도를 확립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품질관리의 체계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1. 포장화 촉진대책**

가) 산지포장 개선시범 사업실시(97. 1. 1)

배추 등 일정 농산물을 골판지 포장재에 포장하여 지정 도매시장에 출하시 포장재비중 일정액 보조

◎ 대상품목

- 배추, 수박, 무, 양파, 마늘, 파, 양배추

◎ 지정도매 시장

- 가락, 구리,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원금액

- 포장재 매당 기준단가의 58% 지원(국고 33%,

지방비25%)

◎ 사업비 지원방법

- 골판지포장 출하주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락을 받은 후에 출하포장재 수량이 기록된 해당법인, 공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자금요청하면 경락대금과 함께 즉시 지급된다.

- 도매시장관리공사는 포장출하품에 대한 포장재 수량확인 서류를 검토한 후에 도매법인에 자금을 집행한다.

◎ 사업량 : 국고 63억

- 세부내역

구분	사업량 (천개)	지원액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시금	
가락	28,800	4,960	3,720	6,200	1,4880
구리	4,175	8,39	6,29	1,047	2,515
안양	2,525	5,01	3,76	6,28	1,505
계	31,500	6,300	4,725	7,875	18,900

나) 도매시장내 포장화 유도대책

구분	대책명	내 용	비 고
포장품 우대조치	교통최적지배정	포장품 반입차량은 교통최적지 우선 배정	
	반입즉시 기계하역	대기시간 축소로 대기료 절감 및 교통체증 방지	
	유리시간대 경매	반입량, 가격추세 등 고려하여 포장품 우선 경매	
	비가림시설 우선사용	5개동 439평 운영	
	상장수수료 인하	○ 품질인증 및 우수출하품 : 45% ○ 일반출하품 : 5%	
	하역료 인하	○ 파렛트당 1,800원 ○ 사과(5천톤차량) - 파렛트 118,000 ↔ 비파렛트 72,000원	'97. 4. 15
	쓰레기유발부담금 면제	○ 산물출하주에 대해 부과 - 마늘 배추 5,000, 무·양배추 700 대파 500, 양파 400	'96. 6
산물품 제재조치	쓰레기유발부담금 인상	○ 배추 : 톤당 3,000원 → 5,000원	'97. 2. 1
	행위부담금 부과	○ 전당 20,000 - 50,000 - 무, 배추, 대파, 마늘, 양배추, 양파 다음기 발생쓰레기량에 따라	'97. 1. 1
	쓰레기종량제 시행	○ 산물품은 5톤차량당 봉투비용으로 870,000원 징수	'97. 4. 1
	다음기금지단속	○ 다음기 작업시 단속	'97. 1. 1

### Ⅲ.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과제

포장화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는 시범사업 실시 초기인 관계로 산지 및 소비자 도매시장에서 포장화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유통종사자들 또한 포장출하에 대한 인식미흡으로 포장화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

#### 가. 산지 출하단계

채소류는 상품의 특성상 크기 중량 등이 각각 달라 규격별로 포장하기가 어려우며 선별장이 아닌 노지에서 포장작업을 하므로 골판지포장은 불가능하고, 출하단계 선별작업 단계에서 표준출하규격을 잘 알지 못하여 속박이 사례 및 다듬기가 불량한 상품이 다수 발생하며, 또한, 골판지포장재비 보조사업 내용을 모르거나 상품가격에 비하여 포장재비 부담이 커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포장출하를 꺼리며, 도매시장내 산물출하 상관행과 포장품에 대한 적정경락가 형성에 불안을 느껴 포장출하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 나. 소비자 유통단계

도매시장의 기능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한 적정가격의 형성이 그 중요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 중도매인은 다듬기 마진이 적은 포장배추 취급을 기피하여 경매에 응하지 않거나 담합하여 저가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포장출하 유인을 주지 못하고, 도매시장내 산물제재, 포장품 우대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다듬기 금지 단속중단, 건조기 설치 등 종량제 부담 회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산물제재책 운영에 있어 허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그 외 제도상 문제인 불공정거래 행위자 (경매거부, 담합경매자 등)에 대한 단속 규정이 미흡하여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

### Ⅳ. 포장화 촉진대책

#### 1. 추진방향

정부의 포장화 정책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내 포장화가 자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출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포장출하의 원활화를 위한 기반조성에도 주력해 나가는

것이다.

#### 2. 추진대책

##### 가. 단기대책

##### 1) 포장화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포장화정책은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핵심적인 농업정책 과제이나 출하주를 비롯한 유통인들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지 및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포장화의 당위성, 유리점 등에 대하여 팜플렛제작 및 교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유통인들이 포장화 정책에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특히, 출하주에 대하여는 출하비용 분석 및 경락가 비교분석 등 경제적 유리점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포장화에 대한 홍보기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포장화 홍보반을 편성, 운영하고 포장화 홍보 기획 및 집행 등을 수행하며 포장화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자문 기능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 2) 속박이 방지 및 불량 선별 억제

속박이품 등은 포장품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포장품의 가격형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속박이 및 불량선별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품목의 품질규격 및 다듬기 방법을 주산단지, 출하시기별로 방문하여 집중교육토록 하겠다.

##### 3) 포장출하 기반 시설 구축

배추 등 채소류는 생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패가 쉽고 보관이 어려워서 상품성 유지가 어려우므로 채소 주산단지에 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저온 저장고 등을 건설 지원하고 운송중 상품성 유지를 위해 냉장탑차의 구입도 지원해 나가겠다.

또한 포장화 촉진을 위해 하역기계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게차 175대, 파렛트 10만매등 총 7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 위주로 포장출하 및 공동출하를 유도해 나가며 정책자금을 포장화가 안되는 품목위주로 집중 지원해 나가도록 해나갈 방침이며, 또한 산지포장센터, 간이 집하장 등을 규격 포장출하의 거점시설로 육성

해 나가겠다.

4) 포장품 가격지지 유도

포장출하유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장품에 대한 적정경락가의 보장이며, 포장품이 산지에서 선별에 대한 보상 및 상품성 등을 고려한 가격이 보장되면 포장출하가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 포장화경매시 일어난 문제점들인 일부 중도매인의 담합경매, 경매불참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시켜 나가기 위해 경매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는 등 농안법 등 관계 규정을 보완해 나가며, 포장품의 적정경락가를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5) 산물제재 강화

출하주 등 유통인들에게 부담이 되나 포장화 정책의 시대적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유발 부담금 징수 및 다듬기금지단속 등 산물출하품에 대한 제재책이 실행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향후 당부는, 시장내에서 배추쓰레기 등의 쓰레기 썰어말리기, 건조기설치 및 가동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여 종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특히 다듬기금지 단속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으므로 수도권 도매시장에는 다듬기 금지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도매시장 다듬기 금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쓰레기 유발부담금은 시장내 쓰레기처리비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6) 속박이품 제재강화

출하주의 자율적인 포장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포장품에 대한 적정경락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물에 대한 포장품의 상품성 유지 및 신뢰성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부는 법인직원, 출하주, 공사직원등으로 구성된 품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속박이품에 대해 가격재사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상습속박이 출하자에 대해서는 출하물량에 대해서 세부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재비 보조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나. 장기대책

1) 비규격품에 대한 반입금지

(가) '97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의 실시결과를 분석해 보면 배추 등의 포장화실적은 당초예상보다 미흡하다. 이는 포장화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이나 조직 이기주의로 인하여 자율적인 정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장내 비포장출하품에 대해서는 반입을 억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비포장품에 대한 반입금지시 반입금지 대상품목 및 대상시장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실시이전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반입금지에 의한 제도정비, 홍보 및 예상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V. 결론

농산물 수입개방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 (가격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포장규격화 및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등이 그 핵심적 과제라고 하였던 바, 여기서, 선진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매시장내 엽근채류의 포장출하율은 아직 미미하며 하역기계화를 또한 부진하여 3%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시장내에서 같은 품목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될 선진외국의 실태는 어떠한가?

프랑스 런지스(Rungis)도매시장의 경우 시장내 반입품의 포장화는 물론 팔렛트 사용율 또한 98%에 달하는 물류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어있으며, 출하단계부터 모든 운송차량을 냉장냉동탑차를 이용하고 있고 도매시장내의 매장 또한 저온저장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배송 또한 냉장냉동탑차가 이용되고 있어 품질유지체계도 완벽하여 가격 및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 포장화 물류비 절감효과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살펴보면 출하에서 경매에 이르기전까지 출하주로부터는 포장재비, 운송비, 하역비, 쓰레기유발부담금 등이 발생되며, 경매후 도매단계에서는 다듬기비용, 행위부담금,

쓰레기종량제 비용등이 발생한다.

여기서 포장비와 관련되는 비용, 다시말하면 포장화시 절감가능한 비용을 살펴보면 운송비, 하역비, 쓰레기유발부담금, 다듬기비용, 행위부담금, 쓰레기종량제 비용이 해당되는 바[이를 배추 5톤의 경우로 환산하여 보면 64만원에 달하며, 골판지포장시 추가되는 포장재비 34만원을 추가하더라도 30만원의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 3. 결어

농산물시장 개방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산물포장화

사업의 조기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포장화의 정착은 시장내 단속강화등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서도 가능할 것이나 가장 적은 비용을 치르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은 유통인 개개인의 포장화 정책에 대한 공감과 이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포장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과 더불어 유통종사자 개개인의 인식전환도 매우 필요하므로 유통인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포장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배추김치 종주국인 한국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배추(채가김)소비국이 된 일본의 열갈이 배추포장 골판지 상자



△우리나라가 배추포장화 정책을 본격화한 1996년도 및 1997년도산 고랭지 배추를 산지 밭에서 다듬어 골판지 상자에 포장하여 서울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한 배추포장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추천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7-17호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추천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6-5호, 1996.4.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추천요령 개정

###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고 보증심사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특례지원의 정의 및 범위)

① "특례지원"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기술우대보증제도의 지원대상 기업에 포함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기술우대보증제도의 기술력 평가 항목중 25점에 상당하는 기술개발능력 평가의 면제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등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이 요령에 의한 특례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지기업은 제외하며, 신용상대가 극히 불량하거나 중소기업청장이 보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은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 (신청)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지원 추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례지원 추천을 받고자 하는 기술(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차대조와 손익계산이 포함된 재무제표(세무관서 발급분) 또는 결산보고서류

### 제4조 (신청서의 검토 등)

①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우선추천대상"과 "별도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추천대상은 신청서류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별도심사 대상은 신청서류의 검토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추천 대상 기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 (우선추천대상의 선정 및 추천)

①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업화대상 기술과 사업화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특례지원



우선추천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사업화대상기술 :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로서 경제성이 있을 것

2. 사업화능력 : 사업화대상기술을 제품화 사업화할 능력이 있을 것

② 우선추천대상 기업은 별표 1의 우선추천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하고 선정하되 사업화대상기술과 사업화능력의 평가 항목중 각각1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추천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에게 특례지원 추천대상임을 통보하여 기술 신용보증기금등 관련 기관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지원대상기업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금융거래 신용도, 영업실적 또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조사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미가동(영업중단)
2.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연체사실 보유
3. 당좌부도 (1차이상) 발생
4.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
5. 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이 압류, 경매,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제6조(별도심사대상의 선정 및 추천)

① 별도심사대상 기업은 다음 각호1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 제1호에만 해당되는 경우
2. 제5조제1항 제2호에만 해당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것임을 달리 입증할 수가 없어 현장실사를 요청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심사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현장심사를 거쳐 특례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지원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현장심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심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반을 편성하여 별도 심사 대상 기업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호 및 제3호를, 제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호 및 제3호를 심사한다.

1. 특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술의 우수성 및 경제성
2. 특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제품화 또는 사업화 추진방법의 타당성 및 수행능력의 보유여부
3. 신청기업은 금융거래 신용도, 영업실적 또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 제8조(보고 등)

지방청장은 제5조 제3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지원 대상기업으로 추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심사반의 반원으로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관련되는 공무원인 반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 신청서						
특례지원신청기술						
	회사명		창업년도	19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TEL FAX	연락자(직위 성명 )			
종업원	명	주요생산품목	주요거래처			
매출액	( 년도: ) ( 년도: )					
부채비율 부채총액 자기자본총액	%	자기자본금	부채내역	※ 운전자금, 시설자금등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수출(로컬포함)	(	연도	백만원)	(	연도	백만원)
기 보증서 발급 내역	기술신용 보증기금	백만원	신용보증기금	백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거래지점명			신청금액	운전:	시설:	
『중소기업에대한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추천요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지원 추천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div>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						
구비서류 1. 특례지원추천을 받고자하는 기술(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서 1부 2. 우선추천대상 또는 별도 심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대차대조와 손익계산이 포함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별표 1〉

〈우선추천평가항목 및 증빙자료〉

가. 사업화 대상 기술(A)

평가자료	증빙자료
① 최근 3년이내에 개발된 신기술 또는 개량기술 중 다음 각호의 기술 ○ 공업기반기술개발품목 및 생산기술 발전 5개년 계획 대상품목  ○ 자본재산업전락품목(기계류, 부품, 소재국가산 개발품목)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에 의한 개발품목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성공품목	- 생산기술연구소 부설 산업기술정책 연구소장이 발급한 기술개발완료 확인서 또는 공문서 사본 - 전자통신연구소장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장)이 발급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사업중 S/W 개발완료 확인서 사본 - 한전지원기술개발사업대상과제중 한전기술연구소장 또는 전기공업진흥회장의 기술개발완료 확인서 사본 - 산업은행장이 발행한 융자약정서 사본 -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발급하는 국산개발완료 확인서 사본 - 금융기관장이 발행한 융자약정서 사본 - 통상산업부장관의 공업발전기금지원 추천공문서 사본 - 지방중소기업청(소)장의 확인서 또는 공문서 사본 - 관리기관(국립기술품질원, 지방중소기업청(소))장의 확인서 또는 공문서 사본
② 최근 3년이내에 특허 실용실안등 산업재산권(전용실시권)을 획득한 기술	- 특허청장이 교부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 전용실시권은 특허등록원부 사본
③ 최근 3년이내에 중앙행정기관 이상의 상을 수상한 기술	- 상장 사본
④ 최근 3년이내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지정된 건설신기술	- 공인인증서 (NT, KT, EM)사본
⑤ 최근 3년이내에 공인인증마크(NT, KT, EM)를 획득한 기술	-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⑥ 최근 3년이내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중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6-389호)에 속하는 기술	- 주무부장관의 기술도입계약신고서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지급인증서 등 관련 입증서류 사본

나. 사업화능력(B)

평가자료	증빙자료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가입업체	-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장이 증명하는 서류 또는 문서 사본
② 100PPM, ISO 9000, ISO 14000, 공장혁신 및 GO마크 인증을 획득한 기업	- 100PPM, ISO 9000, ISO 14000, 공장혁신 및 GO마크 인증서 사본 또는 문서
③ 최근 2년중 어느 한년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가 1%이상인 기업	- 세무서장이 확인한 문서 또는 관련 서류 사본 - 결산서 또는 대차대조표 등 사본
④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유망중소정보 통신기업	- 유망선진기술 중소기업을 확인한 서류 또는 문서 사본
⑤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문서 사본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한 기업	-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가 확인하는 서류 또는 문서 사본
⑦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 보육센터 입주기업	- 창업보육센터 또는 신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문서사본
⑧ 수출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대형 수출, 로칼수출 포함)	- 수출명장, 로칼 L/C 등 수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99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지원계획공고

##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7-250호

〈 1998년도 중소기업기술 혁신 개발 사업지원 계획〉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2월 5일 중소기업청장

### 〈 1998년도 중소기업기술 혁신 개발 사업지원 계획〉

#### 1. 지원분야

지원분야	세부내용
혁신 기술	- 별첨에 열거된 "중소기업기술혁신대상 제품"에 속하는 기술 -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기술수요 조사사업에 의하여 도출된 기술
일반기술	- 100 PPM 품질혁신·공장혁신 등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 사업 또는 이 업종교류 사업의수행과정에서 도출된 기술 - 위에서 열거한 기술이외의 기술로서 공정개선·원가절감·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가 기대되는 기술

#### 2.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혁신기술은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일반기술은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함.
- '98년도 정부출연금 규모 :400억원

#### 3. 신청대상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하고 주식미상장인 중소제조업체,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 소프트웨어업(표준산업분류 72200, 72300 및 7240)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215)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제조업체
-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인이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 (서울지역은 국립기술품질원, 요업분야의 기술은 요업기술원)
- 접수기간 : 1998년 1월 5일 ~10일 (6일간)

#### 4.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의 신청은 1개 중소기업당 1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여타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함.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30%를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함.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입증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6. 문의처

중소기업청	02-503-7934/5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국립기술품질원	02-509-7217/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335-4033	부산 북구 만덕동 산763-13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1-335-4033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6-9666	광주 서구 농성동 300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624-2004	대전 동구 가양동 산 22-4
인천지방중소기업사무소	032-818-8324	인천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	0331-294-638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111-7
강원지방중소기업사무소	0361-56-6033	강원도 춘천시 후평 1동 257-24
충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	0431-231-3380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전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	0652-213-1912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경남지방중소기업사무소	0551-62-5144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지방중소기업사무소	064-21-5546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요업기술원	02-256-6151-4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5